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변재일 · 서영석 의원

(11일)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시하고, 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 를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 제 한을 강화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류제조자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주류제조자등이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음주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 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 4.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 5.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친 음주에 대한 경고문

구를 광고에 표시할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중 "제9조제2항부터"를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로 한 다.

제31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생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	2
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u><</u> 삭 제>
<u>광고</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8조의2(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 「주세법」
	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
	를 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
	서 "주류제조자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류제조자등이 주류에 관
	한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 니할 것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

- 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 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 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 4.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음주하 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 5.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난친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를 광고에 표시할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第28條(보고・檢査) ① 보건복지부 第28條(보고・檢査) ①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 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

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 第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u><신 설></u>

2. • 3.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31條의2(罰則)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주
류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 3. (현행과 같음)